

포르투갈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언어,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스포츠, 청소년, 미디어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2019-2022년)

포르투갈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이하 “서명국”이라 한다)

1990년 11월 21일 리스본에서 서명된 포르투갈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에 따라,

언어,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스포츠, 청소년 분야의 양국간 2019년 - 2022년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희망에 따라,

2016년 6월 20일 서울에서 서명된 2016-2019년 포르투갈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언어,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스포츠, 청소년, 미디어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 하에서 마련된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고자,

2021년 두 국가가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기념하게 됨을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I.

범위

1. 목표

서명국은 2019-2022년간 언어,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스포츠, 청소년, 미디어 분야의 상호 협력을 발전시킨다.

II. 언어와 문화

2. 협력분야

1. 서명국은 양국의 언어와 문화, 특히 미술, 공연예술, 언어, 문학, 영화 그리고 기타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개발한다.
2. 각 서명국은 언어와 문화 담당기관과 타방 유사 기관과의 직접적 협력 관계 수립을 장려한다.

3. 언어 분야 협력

1. 서명국은 양 서명국간 기존 프로그램 및 사업에 따라 미술과 공연 예술분야 예술 사업의 발전과 소개를 지원한다. 포르투갈의 기존 사업은 'DGArtes'가 추진한 '예술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2. 서명국은 가능한 지원 및 소통 수단을 통해 양국 예술 교류를 장려하며, 예술 전속, 교육 및 여타 국내의 관련 활동 정보 보급과 문서화 촉진을 위해 노력한다.
3. 서명국은 예술교육·훈련 기관이 제안한 시각 및 공연예술 분야 교육 이니셔티브를 촉진한다.
4. 서명국은 근현대 예술작품의 전시 교류를 장려한다.
5. 서명국은 문화와 창조산업 분야 협력을 장려하며, 이러한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한국과 포르투갈 기관간의 양국 기관 간 주선을 장려한다.
6. 서명국은 예술과 과학, 기술 분야의 통합 분야의 학문간 연구가 가지는 이익과 가능성, 그리고 국제적 문화의 발전에 대해 가지는 혁신과 영향을 인지하면서, 이를 발전시키는 목적의 사업을 설립과 전파를 촉진한다.

4. 언어

1. 서명국은 두 국가 내의 고등교육기관 간 언어 강의 분야 협력을 장려한다.
2. 서명국은 각 학교 내 타방 언어 및 문화에 대한 교습 홍보를 장려한다.
3. 서명국은 신리스본대학교의 사회과학인문대학에 의해 운영되는 세종학당의 효과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문학

1. 포르투갈은 문화와 외교 분야 내의 권한 있는 정부 기관의 포르투갈 작가들의 번역과 해외 출판을 장려하는 연간 프로그램 및 다른 유사한 지원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 내에서 포르투갈 문학의 전파를 지원한다.
2. 각 서명국은 상대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서적과 작가의 명단 작성을 지원하고, 타방에 이 정보를 전달한다.

6. 영화

1. 서명국은 양국 간 문화 이해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영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영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한다.
2. 포르투갈은 주포르투갈대한민국대사관과 협력하여 'Cinamateca Portuguesa - Museu do Cinema'를 통한 한국 영화감독들과 한국 영화에 대한 이니셔티브의 촉진을 제안한다.

7. 인터넷을 통한 협력

1. 서명국은 인터넷 상에서 상호 언어에 대한 정보의 증진과 원격 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인터넷을 통한 협력을 장려한다.

2. 포르투갈은 한국에 Centro Virtual of Camões를 통하여 포르투갈어 교육과 포르투갈 문화 보급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 이러닝 사이트를 알린다.
3. 한국은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 이러닝 사이트를 포르투갈에 알린다.

8. 출판 지원 사업

1. 포르투갈은 5조에 명시된 포르투갈어 작가들의 출판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한국 출판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2. 한국은 한국문학번역원의 한국 문학이나 한국을 주제로 한 서적의 포르투갈어 번역을 위한 번역·출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포르투갈 출판 업체들 및 포르투갈 내 타 유관 기관을 지원한다.

III.

초, 중등, 고등교육

9. 장학금 교류

1. 포르투갈은 매년 상호주의에 따라 까몽이스청을 통하여 한국 학생, 연구자, 교사에게 까몽이스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까몽이스청 장학금 프로그램을 수여한다.

2. 한국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하여 포르투갈 학생에게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프로그램 내에서 연간 장학금을 제공한다.

10. 정보 및 문서 교류

서명국은 각 교육제도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기 위하여 정보, 문서, 경험 교류를 장려한다.

11. 학교 교류

서명국은 특히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 및 협력 사업 개발 측면에서 전자 페어링 시스템을 포함하여 양국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육학,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학교 간 교류를 촉진한다.

- a) 한국 학교에서 포르투갈어 및 포르투갈 문화교육, 포르투갈 학교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 b) 교육 분야에서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양국 교수시스템 교과과정의 공통 분야

12. 학력 및 자격증 인정

서명국은 시행중인 국내법에 따라 상대국 국민의 자격증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절차를 용이하게 한다.

13.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교육과 직업 훈련

서명국은 유관 기관 간의 파트너십 구축과 실무활동 공유, 정보·문서·출판물·혁신적 교수자료 교류 장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다음 분야에서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 a) 학교 구조·관리·재정, 제공되는 강의 분야/유형, 노동시장으로의 학생들의 통합, 자격의 동등성 인정을 포함한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 b) 공식 또는 비공식적 획득 기술의 인정 및 증명, 지원제도, 모니터링 및 자기평가, 학교 및 전문 자격증 등을 포함한 성인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14. 고등 교육기관 간 교류

- 1. 서명국은 시행중인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자격증과 졸업장의 동등성을 결정 및 인정을 목적으로 한 각 고등 교육 기관간의 협력의 발전을 장려한다.
- 2. 서명국은 정보, 교수법, 교육과정 교류 및 교사, 교직원, 학생 교류 측면에서 각 고등교육 기관 간 직접 협업 개발을 장려한다.

IV. 과학 및 기술

15. 과학과 기술 분야의 교류 및 협력

- 1. 서명국은 양국간 과학자, 전문가, 학자 및 연구원 교류를 촉진한다.

2. 서명국은 과학, 기술 개발 및 혁신 분야에서 협력 활동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V. 스포츠

16. 스포츠 협력

1. 서명국은 스포츠 담당 정부기관을 통해 스포츠 연구, 스포츠 윤리, 기초 스포츠, 장애 스포츠,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응, 도핑 반대, 스포츠 기술자 및 선수 훈련 영역 내 스포츠 분야 협력을 촉진한다.
2. 서명국은 양국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행사에 선수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VI. 청소년

17. 청소년 협력

서명국은 양국의 청소년 정책과 문화에 대한 상호 지식을 심화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분야 내 교류와 제도적 협력을 장려한다.

VII. 미디어

18. 미디어 협력

1. 서명국은 다음 분야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양국의 방송분야 협력을 촉진한다.
 - a) 상호 문화의 이해 증진을 위한 예술, 미식, 소설, 예능 성격 등의 방송분야 콘텐츠 교류
 - b) 신 디지털 기술을 통한 방송분야 정보 교류
 - c) 1992년 7월 29일 리스본에서 서명된 Radiotelevisao Portuguesa와 KBS간의 협력 협약상 공동 이니셔티브의 강화된 이행을 통한 방송 분야 협력
 - d) 방송분야 국제 행사의 공동 참여
2. 포르투갈은 1997년 1월 29일 및 2015년 6월 18일 서명된 포르투갈 뉴스기관(이하 LUSA)와 한국뉴스기관(이하 연합뉴스)간의 프로토콜에 기반한 양 기관 간 기존 협력의 유지 및 증진을 촉진한다.
3. 포르투갈은 언론인을 위한 전문교육센터(CENJOR)를 통해 한국이 제안한 언론인 전문교육 범위 내 해당 이니셔티브 제안을 분석할 가능성을 표명한다.

VIII. 재정 및 행정 조항

19. 재정 및 행정 조항

본 시행계획서에 언급된 교류는 다음 방침을 따라 시행한다.

- a) 그 어느 활동, 교류 프로그램 또는 행사도 항상 서명국과 관련 주체의 재정적 여력에 따르며, 양국의 국내법에 따라 시행된다.
- b) 참여자의 수, 각 활동의 기간, 기술적, 재정적 비용 등은 양 서명국이 각 사례에 따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사전에 합의한다.
- c) 본 시행계획서상 교류와 관련된 기술적, 재정적 세부 사항은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양국의 관련 기관이 직접 합의한다.
- d) 본 시행계획서는 양국의 국내법 및 국제법 하에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창설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

IX. 최종조항

20. 기타 교류 및 협력

본 시행계획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양 서명국간 공동으로 결정될 수 있는 언어,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스포츠, 청소년, 미디어 분야 내 여타 형식의 교류와 협력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21. 분쟁의 해결

본 시행계획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도 외교 경로를 통한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22. 수정

본 시행계획서의 수정은 외교 경로로 전달된 서명국의 서면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

23. 서명국간 협의

서명국간 차기 협의는 외교경로를 통해 합의된 일자에 서울에서 개최된다.

24. 발효 및 기간

1. 본 시행계획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신규 시행계획서 서명시까지 유효하다.
2. 각 서명국은 6개월 전 사전 서면 통지로 본 시행계획서를 종료할 수 있다.
3. 본 시행계획서 종료시, 동 계획서 하에서 개시된 활동 및 종료 시점에 진행 중인 활동은 타방 서명국이 달리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완결시까지 해당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019년 10월 11일 리스본에서 포르투갈어, 한국어, 영어로 2부씩 서명하였으며, 각 본은 동일하게 유효하다.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 시 영문본이 우선한다.

포르투갈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 은2)